

#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    월   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람시간 변경과 입장료 면제에 대한 기타 조항 및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게시에 관한 의무규정 조항을 추가하여 관람객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(조례 제2807호 2004. 7. 1)에 따라 동절기 관람시간을 연장하고 매표시간을 조정하도록 함(제6조, 제8조)
- 입장료면제 규정중 “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” 조항을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(제7조)
-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등 게시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 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(제9조, 제9조의1)

## 3. 의안전문 : 불 임

## 4. 관련법령 발취 : 불 임

##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청남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
제7조제2항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입장권 대표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중 “흡연?음주”를 “지정된 장소의 흡연 및 음주”로 한다.

제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1(요금표 등 게시)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제6조(개관) ①(생략)  <u>②청남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1. 하절기(3월~10월) : 오전 9시부터                      오후 6시까지                      2. 동절기(11월~2월) : 오전 9시부터                      오후 5시까지</p>	<p>제6조(개관) ①(현행과 같음)  <u>②청남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                     오후 6시까지로 한다.</u></p>
<p>제7조(입장료 징수 등) ①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1~9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설〉</p>	<p>제7조(입장료 징수 등)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1~9(현행과 같음)  <u>10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                    되는 자</u></p>
<p>제8조(입장권) ①(생략)  <u>②입장권 매표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                    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                    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하고, 매표소에                      는 입장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8조(입장권) ①(현행과 같음)  <u>②입장권 매표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                    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                     종료 1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.</u></p>
<p>제9조(입장금지?제한) ①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                    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                     1. 흡연?음주 또는 취사행위</p>	<p>제9조(입장금지?제한)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지정된 장소외 흡연 및 음주 또는                      취사 행위</p>

현	행	개 정 (안)
	<u>〈신 설〉</u>	<u>제9조의1(요금표 등 게시)청남대관리</u> <u>사업소장은 입장요금표와 관람객</u> <u>준수사항을 여러사람이 잘 볼 수</u> <u>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

제13조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 
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  
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에는 점심 시간을 두지 아니한다.